

2022년 1월 1일 시행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플랫폼 이용사업주용)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Contents

I .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정의)** 노무제공자,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정의, 적용대상

<2> **(신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이용사업 개시종료신고, 피보험자 신고 등

<3>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및 원천공제(납부)

II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III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IV . 고용보험 업무수행기관 안내



I.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1.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21.1
시행

- ① 퀵서비스기사
- ② 대리운전기사

217.1
시행

-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강사, ③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택배기사,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⑦방문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⑪건설기계조종사,
- ⑫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1. 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사업주) 배송 수단 관리 구분 필요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신고하지 않음
(원천공제도 하지 않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1. 노무제공자

소득기준

✓ 소득합산 신청
(22.1.1. 시행)

연령기준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 적용(즉,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다만,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은 당연 적용됨
-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
- ❖ 적용확대 시행일인 22.1.1.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 적용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노무제공플랫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고용법 제77조의7제1항)

1_3.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

퀵서비스업체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업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 주요 의무

- ①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등)
- ②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
- ③ 고용노동부·공단의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
-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



<1> 정의

1_1. 노무제공자

1_2. 사업주

1_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3.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 플랫폼사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고의무자 사례>



<유형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인 경우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플랫폼사)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고용보험 신고·납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납부하는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 지원**
-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유형2> 노무제공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플랫폼사 특례 적용)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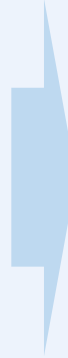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플랫폼 이용계약



플랫폼사



고용보험 신고·납부

플랫폼사

-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 종사자가 직접 신청 공단이 사업주,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신고 기한) 최초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별(근로자노무제공자) 각각 별도 성립신고
 - 22년 최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는
1월 14일까지 신고 필요
- (신고 정보)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단) 노무제공자 전용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서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목적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영입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한급(반환)	예금주명	* 모회로 정산 등 한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사전신고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승)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 필요여부 체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 해당	관리번호	
	독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 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업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 해당		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2. 플랫폼사의 이용사업

- 개시신고
- 종료신고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 **(신고 기한)** 플랫폼이용계약 체결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22년 최초 신고는 1월 14일까지 신고 필요
 - 이후 신규 이용사업장을 매월15일까지 신고
- **(신고 정보)**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등

⇒ 퀵서비스업체, 음식배달업체, 대리운전업체

(공단)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별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번호 부여

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 **(신고 기한)** 플랫폼이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이용사업 종료사업장을 매월15일까지 신고
- **(신고 정보)** 이용사업 개시번호, 플랫폼 이용 종료일 등

(공단)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별
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처리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2. 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단기)

일반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기사를 **모집하여 계약하고 사업주가 이용하는 플랫폼(프로그램)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기 계약으로 판단)
- (서식) <1>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 <1> 취득, <2> 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월보수액 통보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공통)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1> 취득: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직종,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 <2> 상실: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3>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단기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①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와 노무제공자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인 사람**
 - ② 배송/대리 호출건을 발생시킨 발주사(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주와 계약한 노무제공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배송/대리 호출(공유콜)을 수행하는 사람**

(사업주와의 계약 없이 노무제공자가 앱상 호출건을 수락 → 호출건별 계약체결로 보아 단기노무제공자로 적용)
- (서식)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 정보)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상실사유코드 신설) "4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종료에 따른 이직"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2. 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취득 신고

- (서식) <1>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 기한) 취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취득일)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일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제외되다가
소득변동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취득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기사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22.1.15.
 - ♣ 월보수액 = 총수입 - (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 경비율 30.4%로 가정
= 300만원 - (300만원 X 30.4%)
= 300만원 - 91,200원 = 208,800원
- (사례2)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이고 1월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1월 적용 제외
- 2월의 월보수액이 150만원인 경우 → 취득일은 22.2.1.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2. 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상실 신고

-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상실일) ①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노무제공 종료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취득 중이었으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 (이직월)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달

상실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 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2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상실일은 22.7.16.
- (사례2) 노무계약 기간이 22.1.5.~22.7.15.이고 당연취득 되어 22.1.5.부터 취득되었으나, 5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5.1.
(즉, 피보험자격은 22.1.5.~22.4.30. 기간 유지됨)
- (사례3)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7.1.

<2> 신고

2_1.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 신고

2_2. 노무제공플랫폼사의 이용사업 및 피보험자 신고



2_2. 플랫폼사의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일반 노무제공자_월보수액 통보

- (서식)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 미신고시 최근 신고된 보수액으로 보험료 부과
-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직권 취득, 상실
처리함

→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22. 4월 이후 가능

플랫폼사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신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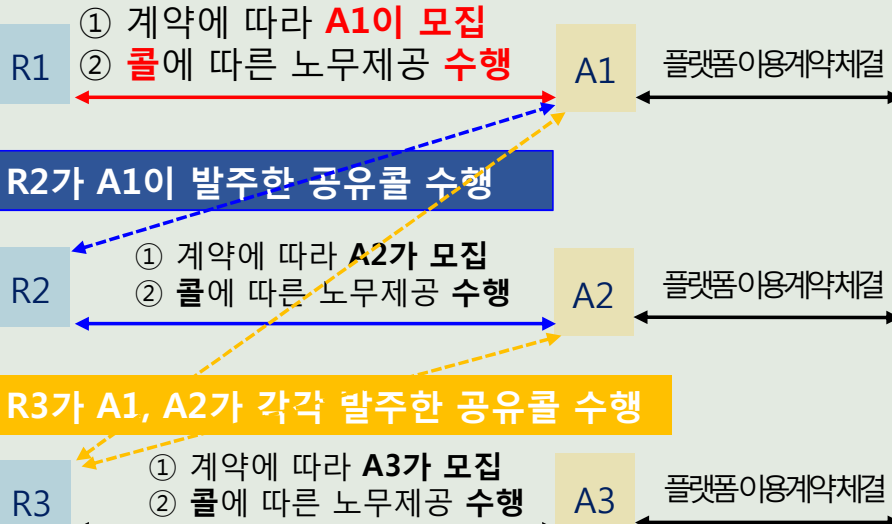
플랫폼내 노무제공 내역(22년 1월 가정)

기사

사업주

(퀵서비스업체,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업체)

플랫폼사



플랫폼사
신고

이용사업
개시신고

피보험자 신고

일반 노무제공자
(취득월보수액신고)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A1
개시
번호 R1

A1
개시
번호 R2 R3

A2
개시
번호 R2

A2
개시
번호 R3

A3
개시
번호 R3

P1
플랫폼
등록번호
부여

A1
개시번호
부여

A2
개시번호
부여

A3
개시번호
부여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적용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22.1.1.(시행일) 기준 65세이상이면 적용 제외
 - 다만,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적용

사례별 판단(일반 노무제공자 기준)

- (사례1) 생년월일이 1957.11. 이전인 노무제공자가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 65세 이상자로 적용 제외
- (사례2) 생년월일이 1957.2.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 2022.1.5.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 (사례3) 생년월일이 1957.1.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기사로 일하는 경우 단, 5년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 근로자로 취득됨
→ 65세 이상이더라도 당연 적용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외국인 노무제공자) 체류자격별 적용

- ① (당연적용)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
- ②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을 받는 자가 퀵·대리 기사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 취득 허용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

- 근로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예술인 간 **이중 취득 모두 허용**
 - 다만, 근로자↔근로자 간 이중취득은 불가
 - 일반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노무제공자를 당연 취득
* 가입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가능
 - 단기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선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 **같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이중 취득은 불가**

이중취득 예시

- (예시) 노무제공자 vs 예술인 vs '갑' 사업 근로자(월 평균보수 300만원) vs '을' 사업 근로자(월평균보수200만원)인 경우
 - 노무제공자, 예술인, '갑' 사업의 근로자로 이중 취득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1>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필요경비) 직종별 경비율 고시 예정(12월말)
- 월보수액 산정식 = 총수입(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 소득 - (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2>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및 월별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1.4%
 - 실업급여사업만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미적용)
 - 22.7.1.부터는 1.6% 적용 예정
- (보험료의 부담) 노무제공자(0.7%)와 사업주(0.7%)가 각각 1/2씩 부담
 - 22.7.1.부터는 노무제공자(0.8%)와 사업주(0.8%) 각각 1/2씩 부담 예정
- 월별보험료 산정식 = 월보수액 X 0.7%(노무제공자 부담분)
+ 월보수액 X 0.7%(사업주 부담분)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3> 하한 기준보수

-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 기준보수의 60%인 798,000원을 실제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함
 -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별보험료는 월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는 18,620원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 단기노무제공자는 하한 기준보수 미적용(실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4> 보험료 상한액

- **(보험료 상한액)**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부과
 -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고시
 - 월 441,150원(연간 5,293,800원)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월보수액과 월별보험료 산정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음식배달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경비율 30.4%로 가정)

→ 월보수액은 2,088,000원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3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4\%) \\ &= 300\text{만원} - 912,000\text{원} = 2,088,000\text{원} \end{aligned}$$

* 경비와 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절사임에 유의

→ 월별보험료는 29,2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2,088,000\text{원} \times 0.7\% + 2,088,000\text{원} \times 0.7\% \\ &= 14,616\text{원} + 14,616\text{원} = 14,610\text{원} + 14,610\text{원} = 29,220\text{원} \end{aligned}$$

* 보험료 산정 시 원단위 절사임에 유의

월보수액 산정과 하한 기준보수 적용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150만원인 경우(경비율 21.4%로 가정)

→ 월보수액은 1,179,000원이나, 하한 기준보수 적용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150\text{만원} - (150\text{만원} \times 21.4\%) \\ &= 150\text{만원} - 321,000\text{원} = 1,179,000\text{원} \end{aligned}$$

→ 월별보험료는 18,6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end{aligned}$$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사 정보>

- 플랫폼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사업주 정보>

-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플랫폼 이용 개시일 등

<노무제공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취득·상실일(노무제공일), 월보수액
- (외국인) 체류자격, 국적 등

3년간 정보 자료 보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정보
 - 퀵서비스 업체
 - 음식배달 업체
 - 대리운전 업체
- 노무제공자 정보
 - 퀵서비스 기사
 - 음식배달 기사
 - 대리운전 기사

근로복지공단

- 플랫폼 사업장 관리
 - 플랫폼사 등록번호 부여 등
 - 월별보험료 산정 부과
 - 플랫폼사 사무지원금 지급

- 노무제공 사업장 관리
 - 사업주별 사업개시번호 부여 등

- 노무제공자피보험자격관리

-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부관련 자동이체 관리
- 월별보험료 고지서 송부
- 고용보험료 납부처리
- 고용보험료 체납관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사업 관리
 - 구직급여 신청처리 등
- 출산전후급여 관리
 - 출산전후급여 신청처리 등



Ⅱ.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22년 고시 금액 230만원)**

지원 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 기적용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지원 절차

- **플랫폼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별도 신청)
 - 기존에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도 별도 지원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함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방법

-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직급 지급
 - ① 법정 신고기간내에 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 ②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1월 보험료 3.10일 납부)

지원 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신규와 기존 구분없이 지원)

유의 사항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각각 이중취득 된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예) 근로자 100만원(A), 노무제공자 100만원(B), 예술인 100만원(C)
 - *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으로 A,B,C 모두 지원대상
 - * 각각의 사업장에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함



Ⅲ.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 **실업 상태일 것(피보험자격상실)**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
(이전에 타사업장에 취득되어 있었던 다수 취득자가 대상)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는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다수 취득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합산하여 산정함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 (사례1) 일반 노무제공자(R) '22.3.11.취득, '22.12.20. 이직한 경우
→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text{개월}) = 9.37\text{개월}$
 - (사례2)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text{개월}$		
	3개월			1.3개월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 근로자로 구직급여시-근로자 피보험기간, 예술인으로 구직급여시-예술인 피보험기간,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시-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된 경우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text{개월}]$$

(사례1)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25(=1-9\div 12) \leq 0.5(=90\div 180)\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사례2)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67(=1-4\div 12) \leq 0.67(120\div 180)+0.44(=4\div 9)\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감액 기준

- 노무제공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
- 지급 중지(전액 감액) :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 감액 기준 :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감액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_1. 구직급여

6_2.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IV. 주요 Q & A





<Q&A> 피보험자 판단,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판단

Q. 대리운전기사 겸 지점장의 경우 사업주로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피보험자로 판단해야 하는지?

A) 대리운전기사겸 지점장의 경우

(현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번호만 생성시켜 콜을 받아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 대리운전업체에서 발주한 콜을 수행, 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함

- 대리운전업체 사업주로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로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면 해당 콜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타 대리운전업체의 발주콜을 수락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단기노무제공자로 판단하고, 플랫폼사가 발주사를 사업주로 보아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하여야 함

Q.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보수액 신고로 인해 겸업수행, 소득노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보험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공단이 보유한 기사의 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지 여부?

A)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된 노무제공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 피보험기간, 취업 사업장 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타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등에 따르지 않고는 외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외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에 피보험 자격 및 소득 정보는 제공됨



V.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안내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고용보험업무 수행기관

기관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등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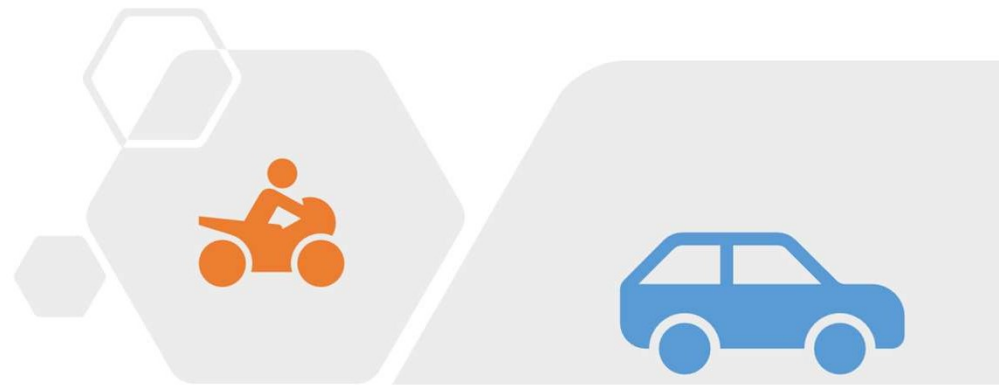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센터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전화	(특고)02-6946-0500 (예술인)02-2097-925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223-3102
				특고가입2부	0502-223-1203
특고가입3부				0502-223-1204	
예술인가입부				0502-223-3203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지역본부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 - 경기도 외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기평군				
부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661-1102
				특고가입2부	0502-661-1103
관할구역	부산지역본부 및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451-1102
				특고가입2부	0502-451-1103
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경기도 외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 제외)				
대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870-1102
				특고가입2부	0502-870-1103
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합니다